

KED가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함께 합니다!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기업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 신청 대상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이용고객 중

- 대한민국 소상공인 기업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 신청 방법 : 사이트 회원가입 후 평가 신청



- ※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무료쿠폰 자동 생성 (2020년 4월말까지 신청분)
- ※ 신청 후 개인기업의 결산기 경과로 연도 중에 재신청시 동일 적용
- ※ 급행, 특급, 대면평가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와 부동산·법인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과

☀ 신청 기준 : 소상공인 (대구·경북지역은 중소기업 포함)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종업원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소기업 : 3개년 평균매출 업종별 120억원 이하~10억원 이하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 중기업 :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

☀ 무료쿠폰 관련 문의 : 1811-8883, 9995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무료 신용평가 Q&A

Q. 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대구지역은 중소기업까지)에 해당하고, 4월 30일까지 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혜택을 드립니다.

Q.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Q. 중소기업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A.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1항 별표3 참조**_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조(주된 업종 3개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중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소기업 수수료 면제는 대구경북지역만 해당됨]

Q. 대구·경북지역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A.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코로나19의 피해가 특히 크기 때문에 소기업까지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이 대구 또는 경북에 소재하여야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일이 1년 이상 경과했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조달청 입찰조건에 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로 되어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은 확인서가 매년 3월 말로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기업데이터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정의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확인서는 바로 발급됩니다.

Q.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후 신용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 접속하면 수수료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무료쿠폰이 생성됩니다.

Q. 기타 궁금한 문의전화는?

A. 본사 대표전화 **1811-9995, 8883**

각 지역 대표전화 부산 051)667-5700 / 대구경북 053-251-8800 /

경남 055)285-0022 / 대전충청 042)610-7300 / 호남 062)380-0900

** ■ 기업규모 분류 기준

1.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2. 중견기업 : 판단제외 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보호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중 연간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하도급거래법 제 13조 ①항등의 적용대상인 기업

4.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

5. 소기업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3개년 평균매출액
C10, C11, C14, C15, C19, C20~C21, C23~C26, C28~C30 C31202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 C32, D, E36	120억원 이하
A, B, C12, C13, C16, C17, C18, C22, C27, C31 C31202 & C31322제외 C33, F, H, K	80억원 이하
G, J	50억원 이하
E(E36제외), L, M, N, R	30억원 이하
I, P, Q, S, C34	10억원 이하

6. 소상공인 : 소기업중 상시종업원이 5명 미만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7. 판단제외

- 비영리목적의 기업·공공기관 중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
-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업종이 금융업(보험업 포함) 또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인 기업